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553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5532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025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황진호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0259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D와 피고 B이 2020. 5. 25.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89,105,5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105,5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G가 사망한 2016. 1. 26.경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5. 11.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판사 김영환